



# 감사원

## 주의요구(약식)

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정지 해제 사실 미게재

소관기관 국방부

조치기관 국방부

내용

국방부는 2022. 12. 15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가계약법”이라 한다) 제27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 ①(대표자 A)에 대해 6개월 (2022. 12. 30.~2023. 6. 29.)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, 이를 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게재하였다.

한편, 주식회사 ①는 2023. 3. 2.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방부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,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. 3. 8. 국방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(재결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)를 결정하였다.

이에 따라 국방부는 주식회사 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였으며,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. 7. 18. 주식회사 ①의 처분취소 청구를 최종 기각하였다.

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참가

자격 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국방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가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.

그런데 국방부는 2023. 7. 18.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재결 이후 주식회사 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2023. 12. 3.까지 집행정지 해제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았다.

이로 인해 김포시가 주식회사 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2023. 10. 13. 위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“2023년 국지도 ①호선 등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”(계약금액 19,760,400원)를 발주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**     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 등을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해제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